

2020년도 제3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

I. 추가경정예산안 총괄

1. 세입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과목-내역 | 2020 기정예산 | 2020 추경예산(안) | 증감액 | 증감률(%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합 계 | 보조금 | 6,293 | 6,293 | - | - |
|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| 국고보조금등 | 6,293 | 6,293 | - | - |
| |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| 6,293 | 6,293 | - | - |

2. 세출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2020 기정예산 | 2020 추경예산(안) | 증감액 | 증감률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총 계 | 66,361 | 70,061 | 3,700 | 5.5 |
| 일 반 회 계 | 36,561 | 36,561 | - | - |
|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| 759 | 759 | - | - |
| 도시개발특별회계 | 29,041 | 32,741 | 3,700 | 12.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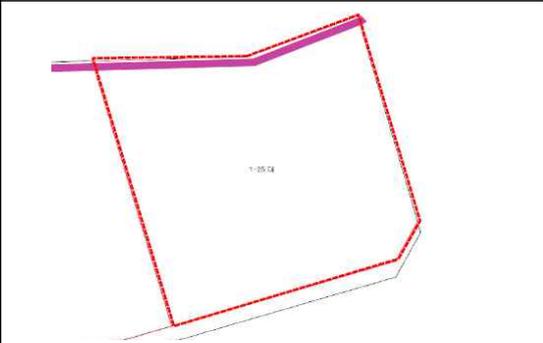
II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회계 | 사업명 | 통계목 | 2020 기정예산 | 2020 추경예산(안) | 증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총 계 | | | - | 3,700 | 순 증 |
| 도시개발 특별회계 |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사업 | 시설비 | - | 3,700 | 순 증 |

Ⅲ. 검토의견

-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, 세출예산(안)은 당초 세출예산 663억 6천1백만원 대비 37억원을 증액한 700억 6천1백만원으로, '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'('20.3.~'20. 12.)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에 따른 것임.
-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0년 본예산 편성시기가 종료된 2019년 11월 사업예정 부지내 하수암거가 설계공모시 제공된 하수관로 도면과 달리 사업부지내 저축되는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이설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임.

| 구분 | 설계공모 지침서('18.11.) | 현장조사 결과('19.11.) |
|------------|---|--|
| 하수관로 도면 |  |  |



- 해당 하수암거가 주변 핵심사업(로봇과학관, 서울사진미술관) 예정부지에도 저축되어 사업추진 부서(경제정책과, 박물관과, 동북권사업과)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, 동일한 시설에 대해 이설공사 시기가 달라지고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총괄부서(동북권사업과)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<하수관로 현황>

| 계 | 서울사진미술관 예정부지내 | 로봇과학관 예정부지내 | 서울아레나 예정부지내 | 도 로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L=310m (저축연장) | □1.8×1.8m, L=43m | □1.8×1.8m, L=52m | □1.8×1.8m ~ □2.0×2.0m L=180m | □1.8×1.8m ~ □2.0×2.0m L=35m | 토피 H=2.5 ~3.5M |

<사업 추진 현황>

| 시 설 명 | 서울사진미술관 | 로봇과학관 | 서울아레나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사업위치 | 창동 1-7 | 창동 1-25 | 창동 1-23, 1-24 | |
| 사업개요 |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2층/지상3층 연면적 6,109㎡ |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2층/지상4층 연면적 7,058㎡ |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1층/지상6층 연면적 173,486㎡ | |
| 사업기간 | 2015~2023년 | 2015~2023년 | 2015~2023년 | |
| 착공시기 | 2021. 6. (설계중) | 2020. 12. (설계중) | 2020. 12. (협상진행중) | |

- 설계 및 공사는 도봉구에서 시행할 계획이며, 설계비(2억원)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미 교부(시 자치행정과, '20. 3.)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('20.3.~6.) 시행 중임.
- 참고로, 본 하수암거 이설 사업은 하수도법 제18조(공공하수도관리청)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(관리의 범위),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와 제5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, 비용배분)에 근거하여 시행할 예정으로(붙임 참조),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하면 하수관로는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해야 하나, 예외적으로 내경 900mm 이상 하수관로의 설치·개량비는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규정(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라목)하고 있음.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자 |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|
| 연락처 | 02-2180-8205 |
| 이메일 | kslimga@seoul.go.kr |

【붙임】 관련법령

하수도법

제18조(공공하수도관리청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②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하수도법 시행규칙

제9조(관리의 범위)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

가.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·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: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

나.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: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
2.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: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**사용료 등으로 충당**하되,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

제4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) ①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시 장

가. 공공하수처리시설

나. 분뇨처리시설

다. 차집관로(중계펌프장·우수토실 포함)

라. 삭제

2. 구 청 장

가. 하수관로(중계펌프장 포함)

나.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

다. 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

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업은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할 수 있다. <신설 2009.11.11.>

제5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) ① 「**하수도법 시행규칙**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.) **제9조제2항**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

가.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·개량·수선 및 유지관리비

나. 분뇨처리시설의 설치·개량·수선 및 유지관리비

다. 차집관로(중계펌프장 포함)의 설치·개량·수선 및 유지관리비

라.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.7㎡ 이상 하수관로(중계펌프장 포함)의 설치·개량비

마. 빗물펌프장의 설치·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

바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사업비